



## 서울남부지방법원

### 판 결

사 건 2026고정442 저작권법위반  
피 고 인 A  
검 사 진동화(기소), 고인혁(공판)  
판 결 선 고 2026. 6. 16.

### 주 문

피고인을 벌금 3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## 이 유

#### 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2025. 4. 2.경부터 2025. 7. 28.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,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, 피해자 D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'E'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복제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.

#### 증거의 요지

##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

1. 저작권등록 카탈로그(E), 크랙자료(Machine Event Report), IP 후이즈 및 F 조회 결과

## 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, 벌금형 선택

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판사            고철만 \_\_\_\_\_